

商品売買契約書(상품매매계약서 (양식))

買主である玄海農財通商合同会社(以下「甲」という)と売主である\_\_\_\_\_ (以下「乙」という)は、商品の売買に関し、以下のとおり契約(以下「本契約」という)を締結したので、その証拠として本書を2通作成し、甲乙各1通保管する。

매수인 현해농재통상 합동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도인 주식회사 마이크로디스플레이(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품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第1条 (基本合意)** 乙は甲に対し、\_\_\_\_\_ (以下「本件商品」という)を別紙目録1記載の数量、価格および付帯条件で甲に売り渡すことを約定し、甲はこれを買受けることを約定する。

2 本契約は、本契約書の締結日から効力を生じ、本契約書の条項に基づき途中で解除される場合を除き、1年間効力を有する。

**제1조(기본합의)** 을은 갑에게 농업용 전동운반차(이하 "본건 상품"이라 함)를 별지목록 표1에 기재된 수량, 가격 및 부대조건으로 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갑은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한다.

2 본건 계약은, 본건 계약서 체결일부터 효력을 생기며, 본건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중도로 해지될 경우를 제외하여 1년간의 효력을 가진다.

**第2条 (引渡し)** 乙は甲に対し、以下の引渡場所および納入日にて、本件商品を引渡す。

(1) 引渡場所 日本国博多港コンテナターミナルの陸地部分

(2) 納入日 20XX年X月X日

2 甲または乙が納入日または引渡場所の変更を申し出た場合には、その相手方の了承を得て、新たな納入日または新たな引渡場所に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変更により費用が増額した場合には、その増額の部分は変更を申し出た者の負担とする。

**제2조 (인도)** 을은 갑에게 아래의 인도장소 및 납기일에 본건 상품을 인도한다.

(1) 인도장소 일본 하카타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육지 부분

(2) 납기일 : 20XX년 X월 X일

2 갑 또는 을이 인도일 또는 인도장소의 변경을 제안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인도일 또는 새로운 인도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단, 그 변경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은 변경을 신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第3条 (代金の支払条件)** 代金の支払条件は、以下のとおりとし、甲は乙に対し、次の代金を乙の指定する口座に電信為替で入金することで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振込手数料は、甲の負担とする。

(1) 保証金：本契約締結日からX日以内(総支払額の30%)

(2) 残金：乙の保管場からの出荷日前日まで(総支払額の69.X%)

2 甲は、別紙目録1に記載した\_\_\_\_\_および\_\_\_\_\_を、本契約締結日より10日経

過しても乙が提出しない場合、甲は何らの催告を要さず残金の支払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甲は、乙に支払った保証金の返還を別途請求できる。

**제 3 조(대금의 지불조건)** 대금의 지불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대금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신환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송금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보증금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X 일 이내 (총지불금액의 30%)

(2) 잔금 : 을의 보관소로부터의 출하일 전날까지 (총지불금액의 70%)

2 갑은 별첨 목록 1 에 기재된\_\_\_\_\_및\_\_\_\_\_를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0 일이 경과하여도 을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갑은 어떠한 독촉 없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불한 보증금의 반환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第 4 条 (遅延損害金)** 甲が、第 3 条記載の代金の支払いを怠ったときは、乙に対し、支払期日の翌日から完済の日まで、日本国における民法第 4 0 4 条 2 項に規定する年 3 % の割合による遅延損害金 (年 3 6 5 日 の日割計算) を付加して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제 4 조(지연손해금)** 갑이 제 3 조에 기재된 대금의 지불을 게을리 한 때에는 을에게 지불 기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일본국 민법 제 404 조 2항에서 정한 연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1년 365일 일할 계산)을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第 5 条 (所有權の移転)** 本契約に基づく本件商品の所有權移転時期は、甲が乙に代金の支払を完了した時とする。

2 甲および乙 (以下「当事者」という) は、本契約の權利および義務の全部または一部を、他方当事者の事前の文書による合意がある場合を除き、第三者に譲渡してはならない。

**제 5 조 (소유권 이전)**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상품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갑이 을에게 대금 지불을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2 갑과 을 (이하 "당사자"이라 한다) 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第 6 条 (危險負擔)** 本契約に基づき乙が本件商品を引渡した後の危険は甲においてこれを負担する。

**제 6 조 (위험부담)** 본 계약에 따라 을이 본 상품을 인한 후의 위험은 갑이 부담한다.

**第 7 条 (檢査)** 甲は、第 2 条記載の方法により本件商品を受領したときは、受領後 X 日以内に、甲および乙が合意した方法で本件商品の検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検査の方法は、別紙目録 2 に記載した方法とする。

**제 7 조 (검사)** 갑은 제 2 조에 기재된 방법으로 본건 상품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 후 X 일 이내에 갑 및 을이 합의한 방법으로 본건 상품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검사의 방법은 별첨 목록 2 에 기재된 방법으로 한다.

**第 8 条 (不合格品处理)** 第 7 条の検査において、本件商品を構成する\_\_\_\_\_およびその付属品(以下、「本件個別商品」という)中 1 台でも不良または数量不足があったときは、甲は乙に対し直ちに通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甲は、何らの催告を要さず直ちに甲の選択に基づき、乙に対し、返品、商品交換、修理、追加納品、代替品の納入または商品代金減額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場合、返品、商品交換、修理、追加納品または代替品の納入に関する全ての費用は、乙の負担とする。また、商品代金減額処理に係る振込手数料は、乙の負担とする。

**제 8 조 (불합격품 처리)** 제 7 조의 검사에서 본건 상품을 구성하는 운반차 및 그 보속품(이하 "본건 개별상품"이라 한다) 중 1 대라도 불량 또는 수량부족이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전 항목의 경우, 갑은 어떠한 독촉 없이 즉시 갑의 선택에 따라 을에게 반품, 상품교환, 수리, 추가납품, 대체품의 납품 또는 상품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3 전 항목의 경우, 반품, 상품교환, 수리, 추가납품 또는 대체품의 납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상품대금 감액처리에 따른 송금수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第 9 条 (期限の利益の喪失)** 甲について次のいずれかの事由が生じたときは、乙は、何等の通知および催告なくして、甲の期限の利益を喪失させ、残金全額について支払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1) 甲が乙に対する債務の支払を怠ったとき。

(2) 甲がほかの債権者に対する債務の支払を怠り、または約束手形若しくは小切手について不渡事故を起こしたとき。

(3) 破産、民事再生、会社更生等の法的手続またはこれに準ずる手続がなされたとき。

(4) 甲が合併によらないで解散したとき

(5) その他甲が本件契約条項に違反したとき。

**제 9 조 (기한의 이익 상실)** 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어떠한 통지 및 독촉 없이 갑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잔금 전액에 대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 대한 채무 지불을 게을리 한 경우.

(2) 갑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지불을 게을리하거나, 약속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 부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3) 파산, 민사 재생, 회사 정리 등의 법적 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갑이 합병에 의하지 않고 해산한 경우.

(5) 기타 갑이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第 10 条 (解除)** 乙は、甲に第 9 条のいずれかの条項に該当する事由があるときは、何らの催告なしに本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제 10 조(해지)** 을은 갑에게 제 9 조의 어느 한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갑은 어떠한 독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 11 条 (期限の利益の喪失および解除の例外)** 当事者の義務事項の遅滞または不履行が、不可抗力、政府または政府機関の行為、法令の遵守、火災、嵐、洪水、地震、戦争、反乱、革命、暴動、ストライキ等、当事者の合理的な制御を超える原因（以下、「不可抗力」という）によって生じた場合は、その履行ができなかった当事者については義務不履行の責任を負わない。

**제 11 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해지의 예외)** 당사자의 의무사항의 지연 또는 불이행이 불가항력, 정부 또는 정부기관의 행위, 법령의 준수,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전쟁, 반란, 혁명, 폭동, 파업 등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넘어서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第 12 条 (秘密の維持)** 甲および乙は、他方当事者が共有した技術および販売に関する情報（以下、「秘密情報」という）が、本質的に価値があることに合意する。当事者は、本契約の期間中および本契約終了後 5 年間はすべての秘密情報を秘密に維持し、他方当事者の事前の書面による同意がある場合を除き、当事者が許可した役職員および弁護士や弁理士をはじめとした法的に秘密維持義務がある者を除くいかなる第三者に対しても秘密情報を開示しないものとする。

2 秘密情報の範囲は、甲および乙が別途に協議して決定し、念書を作成する。

**제 12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대방이 공유한 기술 및 판매에 관한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및 본 계약 종료 후 5 년간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가 허가한 임직원 및 변호사, 변리사를 비롯한 법적으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를 제외한 어떠한 제 3 자에게도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비밀정보의 범위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각서를 작성한다.

**第 13 条 (協議事項)** 本契約の解釈に疑義が生じた場合および本契約の定めのない事項については、当事者が信義誠実の原則に基づき協議し円満に解決するものとする。

2 本件契約の当事者が契約において使用する言語は日本語および韓国語とする。ただし、両言語間で解釈の相違が生じた場合は日本語を優先する。

**제 13 조 (협의사항)** 본 계약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 및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2 본건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본어 및 한국어로 한다. 단, 양 언어 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본어를 우선으로 한다.

**第 14 条 (疎通方式)** 本契約書に基づくすべての通知、同意およびその他連絡（以下、「疎通」という）は、以下の方法で行うものとする。

(1) 当事者が他方当事者に直接交付したとき

(2) 日本郵政株式会社または大韓民国郵政事業本部による配達証明付き国際スピード郵

便(以下、「国際スピード郵便」という)で送付したとき

(3) 開封通知付き電子メールで送付したとき(ただし、訴状の送達を除く)

2 疎通は、国際スピード郵便においては当事者への配達証明書が他方当事者に交付されたときであり、電子メールにおいては当事者が開封したことを他方当事者に電子的に通知したときまたは返信した場合に完了したとみなす。

3 直接交付における受領拒絶、国際スピード郵便における受領拒否、または住所または電子メールアドレスが他方当事者への通知なしに変更されたことにより送付できなかった場合は、疎通が完了したとみなす。

4 当事者が電子メールにより疎通を図った場合において、他方当事者が開封通知または返信を送らなかったときは、当事者の送信後7日の経過をもって疎通が完了したとみなす。

**제 14 조 (소통방식)** 본 계약서에 따른 모든 통지, 동의 및 기타 연락(이하 "소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

(2) 일본우편주식회사 또는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가 배달증명서를 첨부한 국제특급우편(이하 "국제특급우편"이라 한다)으로 송부한 경우

(3) 개봉통지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단, 소장의 송달은 제외함)

2 국제특급우편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배달증명서가 상대방에게 교부된 때, 전자우편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개봉하였음을 상대방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한 때 또는 회신한 때에 송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직접 교부의 경우의 수령거부, 국제특급우편의 수령거부 또는 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상대방에게 통보 없이 변경되어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당사자가 전자우편으로 소통을 시도한 경우, 상대방이 개봉통지 또는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발송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소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第 15 条 (合意管轄)** 本契約上直接または間接的に生じた甲乙間の紛争については、甲が訴訟を提起した場合は日本国福岡地方裁判所、乙が訴訟を提起した場合は大韓民国○○地方法院を第一審裁判所とすることを合意する。

**제 15 조 (합의관할)** 본 계약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갑과 을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갑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일본국 후쿠오카 지방법원을, 을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대한민국 ○○ 지방법원을 제 1 심 법원으로 하는 것에 합의한다.

(현해농재통상 서식 5 호)

契約締結日 20XX年X月XX日 계약체결일 20XX년 X월 XX일

(甲) 住所 日本国福岡県福津市中央5丁目6番30号

(갑) 주소 일본국 후쿠오카현 후쿠츠시 중앙 5가 6번 30호

玄海農財通商合同会社 代表社員 石坂 晃 印または署名(인 또는 서명)

(乙) 住所

株式会社

代表

印または署名

(을) 주소

주식회사

대표

(인 또는 서명)

別紙目録1 本件商品の数量、価格および付帯条件

별접목록 1 본건 상품의 수량, 가격 및 부수적 조건

1 数量 수량

ア \_\_\_\_\_ : 乙が付与した型式番号 \_\_\_\_\_ 台  
イ \_\_\_\_\_ : 乙が付与した型式番号 \_\_\_\_\_ 台  
가. \_\_\_\_\_ : 을이 부여한 형식번호 \_\_\_\_\_ 대  
나. \_\_\_\_\_ : 을이 부여한 형식번호 \_\_\_\_\_ 대

2 価格 가격

(1) 本体単価 本体 단가

ア 乙が付与した型式番号 \_\_\_\_\_ 1 台につき XX 万 X 千円  
イ 乙が付与した型式番号 \_\_\_\_\_ 1 台につき XX 万 X 千円  
가. 을이 부여한 형식번호 \_\_\_\_\_ 1 대 당 XX 만 X 천 엔  
나. 을이 부여한 형식번호 \_\_\_\_\_ 1 대 당 XX 만 X 천 엔

(2) 本体金額 本体 금액

ア 型番 \_\_\_\_\_ : XX 万 X 千円 × \_\_\_\_\_ 台 = XXX 万 X 千円  
イ 型番 \_\_\_\_\_ : XX 万 X 千円 × \_\_\_\_\_ 台 = XXX 万 X 千円  
총 지불 금액 : XXX 万 X 千円  
가. 품번 \_\_\_\_\_ : XX 만 X 천 엔 × \_\_\_\_\_ 대 = XXX 만 X 천 엔  
나. 품번 \_\_\_\_\_ : XX 만 X 천 엔 × \_\_\_\_\_ 대 = XXX 만 X 천 엔

3 付帯条件 부수적 조건

(1) 輸送等の条件に関して 운송 등의 조건에 관하여

ア インコタームズ : XXX BUSAN / FUKUOKA  
イ ターミナルハンドリングチャージ (THC) : 甲の負担とすること。  
가. 인코텀즈 (Incoterms) : XXX BUSAN / FUKUOKA  
나. 터미널 처리 요금 (THC) : 갑의 부담으로 함

(2) 本件商品の形状および仕様に関して 本건 상품의 형상 및 사양에 관한 사항

- ア \_\_\_\_\_ 本体の形状および仕様 가. \_\_\_\_\_ 本체의 형상 및 사양
- A 本件個別商品のすべてにおいて、乙による組立が終了していること。  
B 本件個別商品のすべてにおいて、乙による社内検査に合格していること。また、社内検査結果の方法および検査の概要を甲が確認可能な状態にしていること。  
C 本件個別商品のすべてにおいて、乙が固有番号を付しており、甲が確認可能な状態でそれぞれの本件個別商品に記載されていること。  
D 本件個別商品のすべてにおいて、付属品の \_\_\_\_\_ を付属品の \_\_\_\_\_ で後に本体に装着した場合、付属書に定める通常の性能を有すること。  
E 乙は本件商品の生産に使用した以下の部品について、入手先、正確な品番および性能の大略が分かる資料(データ1)を本契約締結日から XX 日以内に甲に送付すること。なお、データ1の詳細は付属書1で定めること。  
① : の固有のもの  
② : およびの共通のもの  
③  
④  
⑤  
⑥  
⑦
- F 本件個別商品のうち \_\_\_\_\_ においては、乙が自主的に検査して得られた数値データ(以下、データ2)を、本契約締結日から XX 日以内に甲に送付すること。データ2の詳細な仕様は付属書1の①~を準用すること。
- A 本건 개별상품 모두에 있어서, 을에 의한 조립이 완료되어 있을 것.  
B 本건 개별상품 모두에 있어서, 을의 사내검사를 통과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사내검사 결과의 방법 및 검사 개요를 갑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C 本건 개별상품 모두에 있어서, 을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갑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각각의 본건 개별상품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D 本건 개별상품 모두에 있어서, 부속품인 \_\_\_\_\_ 를 부속품인 \_\_\_\_\_ 로 \_\_\_\_\_ 후 본체에 장착한 경우, 부속 서류에서 정한 통상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 을은 본건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부품에 대하여 입수처, 정확한 품번 및 성능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자료(데이터1)를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XX 일 이내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데이터1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속서류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本체 : 의 고유한 것.  
② : 및 에 공통한 것.  
③  
④

⑤

⑥

⑦

F 본건 개별상품 중 \_\_\_\_\_에 대하여는 을이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얻은 치수 데이터(이하, 데이터 2)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XX 일 이내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데이터 2의 세부적인 사양은 부속서 1 중 ①~을 준용한다.

イ 付属品\_\_\_\_\_の形状および仕様 나. 리튬이온 축전지의 형상 및 사양

A 本件個別商品のすべてにおいて、乙またはその代理人による組立が終了していること。  
B 本件個別商品のすべてにおいて、乙またはその代理人による社内検査に合格していること。また、社内検査の方法および検査結果の概要を甲が確認可能な状態にしていること。

C 本件個別商品のすべてにおいて、乙またはその代理人が固有番号を付与しており、甲が確認可能な状態でそれぞれの本件個別商品に記載されていること。

D 本件個別商品のすべてにおいて、付属品の\_\_\_\_\_で\_\_\_\_\_後に\_\_\_\_\_本体に装着した場合、付属書 1 に定める通常の性能を有すること。

E 乙は本件商品の付属品である\_\_\_\_\_について、入手先、正確な品番および性能が分かる資料(データ 3)を本契約締結日から XX 日以内で甲に送付すること。なお、データ 3の詳細な仕様は付属書 3 で定めること。

F 乙は、本件商品付属品\_\_\_\_\_の組立、社内検査、固有番号の付与を行った乙の代理人について、その氏名(または名称)、住所、連絡先を本契約締結日から XX 日以内で甲に通知すること。

G 乙は、リチウムイオン蓄電池の輸送について、国際基準(UN3481)に適合した輸送を行いつつも、本件商品と同一日に納品するようにすること。同一日の納品が不可能な場合は、本体および充電器より早い日に納品すること。また、同一日の納品ができない場合の通関料の増額分は乙の負担とすること。

A 본건 개별상품 모두에 있어서, 을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조립이 완료되어 있을 것.

B 본건 개별상품 모두에 있어서, 을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사내검사를 통과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사내검사의 방법 및 검사 결과의 개요를 갑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C 본건 개별상품 모두에 있어서, 을 또는 그 대리인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갑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각각의 본건 개별상품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D 본건 개별상품 모두에 있어서, 부속품인 \_\_\_\_\_로 \_\_\_\_\_ 후 \_\_\_\_\_본체에 장착한 경우, 부속 서류 1 에서 정한 통상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 을은 본건 상품의 부속품인 \_\_\_\_\_에 대하여 입수처, 정확한 품번 및 성능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자료(데이터 3)를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XX 일 이내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데이터 3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속서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F 을은 부속품인 \_\_\_\_의 조립, 사내검사, 고유번호 부여를 수행한 을의 대리인에 대하여 그 성명(또는 명칭), 주소, 연락처를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XX 일 이내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G 을은 리튬이온 축전지의 운송에 관하여 국제기준(UN3481)에 적합하는 운송을 하면서도 본건 상품과 같은 날에 인도하도록 한다. 당일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운반차 본체 및 충전기보다 빠른 날에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날로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의 통관료 증액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ウ 充電器の形状および仕様 다. 충전기의 형상 및 사양

A 本件個別商品のすべてにおいて、乙またはその代理人による組立が終了していること。  
B 本件個別商品のすべてにおいて、乙またはその代理人による社内検査に合格していること。また、社内検査の方法および検査結果の概要を甲が確認可能な状態にしていること。

C 本件個別商品のすべてにおいて、乙またはその代理人が固有番号を付しており、甲が確認可能な状態でそれぞれの本件個別商品に記載されていること。

D 本件個別商品のすべてにおいて、付属品のリチウムイオン充電機に充電した後、リチウムイオン充電機を電動運搬車本体に装着した場合、付属書 1 に定める通常の性能を有すること。

E 乙またはその代理人は本件商品の付属品である充電機について、入手先(住所)、正確な品番および性能が分かる資料(データ 4)を本契約締結日から 10 日以内で甲に送付すること。なお、データ 4 の詳細な仕様は付属書 4 で定めること。

F 乙またはその代理人は本件商品の付属品である充電機について、日本国電気用品安全法に定める登録検査機関が発行した適合同等性証明書の写しのうち、甲への納入日時時点で 365 日以上有効なものを残金支払日から 7 日以内で甲に送付すること。

G 乙は、充電機の組立、社内検査、固有番号の付与を行った乙の代理人について、その氏名(または名称)、住所、連絡先を本契約締結日から XX 日以内で甲に通知すること。

A 본건 개별상품 모두에 있어서, 을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조립이 완료되어 있을 것.

B 본건 개별상품 모두에 있어서, 을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사내검사를 통과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사내검사 결과의 방법 및 검사 개요를 갑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C 본건 개별상품 모두에 있어서, 을 또는 그 대리인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갑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각각의 본건 개별상품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D 본건 개별상품 모두에 있어서, 부속품인 리튬이온 축전지로 충전 후 운반차 본체에 리튬이온 축전지를 장착한 경우, 부속서류 1 에서 정한 통상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 을은 본건 상품의 부속품인 충전기에 대하여 입수처, 정확한 품번 및 성능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자료(데이터 4)를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XX 일 이내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데이터 4 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속서류 4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F 을 또는 그 대리인은 본 상품의 부속품인 충전기에 대하여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에 규정된 등록 검사기관이 발행한 적합동등성증명서의 사본 중 갑에게 납품일 기준으로 365 일 이상 유효한 것을 잔금 지불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G 을은 충전기의 조립, 사내검사, 고유번호 부여를 수행한 을의 대리인에 대하여 그 성명(또는 명칭), 주소, 연락처를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XX 일 이내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エ 包装の形状および仕様 라. 포장의 형태 및 사양

- A パレット、上部構造物および側面を覆うビニールから構成される包装とすること。
- B パレットおよび上部構造物の主要材質は乙の任意だが、以下の品質を確保すること。
  - ①木製の場合、材木種は乙の任意とするが、国際基準(ISPM No.15)に従い、熱処理を行った後、証明スタンプを押している資材を使用すること。
  - ②XX フィートドライコンテナに同一種の本件個別商品が X 段で積載ができること。
  - ③パレットの構造は乙の任意であるが、本件個別商品をフォークリフトでのデバンニングが可能な構造をしていること。また、\_\_\_\_\_および\_\_\_\_\_を混載している場合、デバンニングの際にフォークリフト本体またはフォークの交換を必要としないパレット構造にすること。
- C 輸送、デバンニング、倉庫での保管中にパレットから本件物件が脱落しないようにひも等で固定していること
- D 側面を覆うビニールの材質は任意であるが、上記 A、B、C を充足した場合は必須ではないこと。

A 팔레트, 상부구조물, 측면을 덮는 비닐로 구성된 포장으로 하는 것.

B 팔레트 및 상부구조물의 주요 재질은 을의 임의로 할 수 있으나, 다음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①목재의 경우, 목종은 을의 임의로 할 수 있으나,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 열처리를 한 후 인증 스탬프가 찍힌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②동일 종류의 본건 개별상품을 X 단으로 적재할 수 있는 XX 피트 드라이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팔레트 구조는 임의적이거나, 본건 개별 상품을 지게차로 디밴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본건 개별상품인 \_\_\_\_\_ 및 \_\_\_\_\_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디밴닝 시 지게차 본체 또는 포크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팔레트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C 운송, 디밴닝, 창고 보관 중 팔레트에서 운반차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끈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D 측면을 덮는 비닐의 재질은 임의적이지만, 위의 A, B, C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필수사항은 아니하여 생략 할 수 있다.

別紙目録 1 は以上である。別紙 목록 1 은 이상임.

付屬書 1 通常の性能の定義に関して 부속서류 1 통상적인 성능의 정의에 관하여

1 \_\_\_\_\_의場合 \_\_\_\_\_의 경우

ア 以下の事項について、乙の自主検査で設定したデータ 2 と比較した場合、納品した XX 台すべてが全項目においてプラスマイナス 5 % 以内であること

- ①
- ②
- ③

イ 以下の事項について、事前に設定したデータ 2 と比較した場合、納品した XX 台すべてが全項目においてプラスマイナス 2 % 以内であること

- ④
- ⑤
- ⑥

ウ 以下の事項について、正常に動作すること

⑦ \_\_\_\_\_의 韓国語版説明書に記載している内容すべてにおいて、説明書と矛盾しない動作をすること

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의 자체 검사로 설정한 데이터 2 와 비교하였을 때, 납품한 XX 대 모두가 전 항목에 대하여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5 % 이내일 것.

- ①
- ②
- ③

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의 자체 검사로 설정한 데이터 2 와 비교하였을 때, 납품한 14 대 모두가 전 항목에 대하여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 % 이내일 것

- ④
- ⑤
- ⑥

다. 다음 사항에 대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⑦ \_\_\_\_\_ 한국어판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모두에 대하여 설명서와 일치하는 동작을 할 것.

※ 참고 : 괄호 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안전검정 성적서내의 번호임

2 \_\_\_\_\_의場合 \_\_\_\_\_의 경우

ア 韓国〇〇〇院・〇〇〇成績書第 XX XX 号に記載された数値と比較した場合、販売した XX 台すべてが全項目においてプラスマイナス 5 % 以内であること

- ①

②

③

イ 韓国〇〇〇院・〇〇〇成績書第XXXX号に記載された数値と比較した場合、販売したXX台すべてが全項目においてプラスマイナス2%以内であること

④

⑤

⑥

ウ 以下の事項について、正常に動作すること

⑦ \_\_\_\_\_の韓国語版説明書に記載された内容すべてにおいて、説明書と矛盾しない動作をすること

가. 한국〇〇〇원 〇〇〇 성적서 XXXX 호와 비교하였을 때, 납품

한 XX 대 모두가 다음 전 항목에 대하여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5 % 이내일 것.

①

②

③

나. 한국〇〇〇원 〇〇〇 성적서 XXXX 호와 비교하였을 때, 납품

한 XX 대 모두가 다음 전 항목에 대하여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 % 이내일 것.

④

⑤

⑥

다. 다음 사항에 대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⑦ \_\_\_\_\_한국어판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모두에 대하여 설명서와 일치하는 동작을 할 것.

付屬書 2 本体部品の入手先、正確な品番および性能の大略が分かる資料に関して

부속서류 2: 본체부품 입수처, 정확한 품번 및 성능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자료에 관하여

1 \_\_\_\_\_의 경우 \_\_\_\_\_의 경우

ア 本体

①共通: 図面( \_\_\_\_\_의韓国語版説明書X페이지に記されているような形式の5面図に寸法および \_\_\_\_\_을概略的に記したもの)

②自体製作の場合: 組立工程の概要

③外部製作の場合: 製造業者名・住所・連絡先・製造業者から示された仕様書の複写本  
イ \_\_\_\_\_および \_\_\_\_\_

製造業者名・住所・連絡先・品番・製造業者から示された仕様書の複写本

가. 본체

①공통적인 사항: 도면( \_\_\_\_\_ 한국어판 설명서 X 페이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형식의 5 면도에 치수 및 \_\_\_\_\_를 개략적으로 표기한 것)

(현해농재통상 서식 5 호)

② 자체제작의 경우 : 조립공정 개요

③ 외주 위탁 제작의 경우: 제조업체명, 주소, 연락처, 제조업체가 제시한 사양서 사본

나. \_\_\_\_\_ 및 \_\_\_\_\_

제조업체명, 주소, 연락처, 품번,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사양서 사본

2 \_\_\_\_\_の場合 \_\_\_\_\_의 경우

3 両機種に共通する部品 모든 기종에서 공통하는 부품

ア 部品名 : 、 、 、

イ 必要情報 : 製造業者名・住所・連絡先・品番・製造業者が提示した仕様書の複写本

가. 부품명 : , , ,

나. 필요정보 : 제조업체명, 주소, 연락처, 부품번호, 제조업체가 제시한 사양서 복사본

-----  
付属書3 リチウムイオン蓄電池の入手先、正確な品番および性能が分かる資料に関して  
부속서류3 리튬이온축전지의 구입처, 정확한 품번 및 성능을 알 수 있는 자료에 관하여

1 基本事項기본 사항

製造業者名・住所・連絡先・品番・製造業者から示された仕様書の複写本

제조자명, 주소, 연락처, 품번, 제조자가 제시한 사양서 사본

2 日本国電気用品安全法に定められた義務遂行のための事項

일본 전기용품 안전법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위한 사항

下の表の中から該当するものを選んで返送すること

아래 표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반송할 것.

要素 요소	区分 구분
(A) 単電池の形状 단전지의 형상	(1) 円筒形のもの 원통형의 것 (2) 角形のもの 각형의 것 (3) その他のもの 기타의 것
(B) 単電池の電解質の種類 단전지의 전해질의 종류	(1) 液体状のもの 액체상의 것 (2) その他のもの 기타의 것
(C) 単電池の上限充電電圧 단전지의 한계 충전 전압	(1) 4.25V以下のもの 4.25V 이하의 것 (2) 4.25Vを超えるもの 4.25V를 넘는 것
(D) 組電池の質量 조전지의 질량	(1) 7kg以下のもの 7kg 이하의 것 (2) 7kgを超えるもの 7kg를 넘는 것
(E) 電池ブロックの個数 전지 블록의 개수	(1) 1個のもの 한 개의 것 (2) 2個以上のもの 두 개 이상의 것
(F) 過充電の保護機能 과충전의 보호 기능	(1) 組電池で制御するもの 조전지로 제어하는 것 (2) 組電池搭載機器又は充電器で制御するもの 조전지 탑재기기 또는 충전기로 제어하는 것
(G) 用途 용도	(1) 携帯機器用のもの 휴대 기기용의 것 (2) 卓上機器用のもの 탁상 기기용의 것 (3) その他のもの 기타의 것
(H) 組電池の種類 조전지의 종류	(1) はんだ付けその他の接合方法により、容易に取り外すことができない状態で機械器具に固定して用いられるものその他の特殊な構造のもの 납땀 기타의 접합 방법으로, 쉽게 뺄 수 없는 상태로 기계기구에 고정시키고 사용하는 것, 기타 특수 구조인 것 (2) その他のもの 기타의 것

付屬書 4 充電器の入手先、正確な品番および性能が分かる資料に関して

부속서류 4 충전기의 구입처, 정확한 품번 및 성능을 알 수 있는 자료에 관하여

1 基本事項 기본 사항

製造業者名・住所・連絡先・品番・製造業者から示された仕様書の複写本

제조업체명, 주소, 연락처, 품번, 제조업체가 제시한 사양서 사본

2 日本国電気用品安全法に定められた義務遂行のための事項

일본 전기용품 안전법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위한 사항

甲への納入日時時点で365日以上有効な適合同等性証明書が必要であるので、残金支払日から7日以内で甲に送付すること。

갑에의 납품일 기준으로 365 일 이상 유효기간이 있는 적합동등성증명서가 필요이기 때문에, 잔금 지불일부터 7 일 이내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別紙目録 1 付屬書は以上である。별접 목록 1 부속 서류는 이상임.

別紙目録 2 本件商品の検査方法 별접 목록 2 본건 상품의 검사 방법

---

1 数量検査 수량 검사

本件個別商品の数量が契約書に記された数と同じであることを計数する。

본건 개별 상품의 수량이 계약서에 기재된 수량과 동일한지를 계수한다.

2 品質検査 품질 검사

ア 実物検査 가. 실물 검사

- ① \_\_\_\_\_에 \_\_\_\_\_나 \_\_\_\_\_, 부품의 탈락이 없을 것.
- ② \_\_\_\_\_・\_\_\_\_\_とも \_\_\_\_\_がないこと。  
\_\_\_\_\_, \_\_\_\_\_ 모두 \_\_\_\_\_가 없어야 한다.
- ③スイッチのオンオフができること。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어야 한다.
- ④\_\_\_\_\_上で \_\_\_\_\_を操作し、正常に動作すること (警告音作動も含む)  
\_\_\_\_\_ 위에서 \_\_\_\_\_을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경고음 작동 포함).
- ⑤
- ⑥本体、充電器、\_\_\_\_\_に固有番号が付与されていること  
본체, 충전기, \_\_\_\_\_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①②③は全数調査とし、④⑤⑥はXX%の確率で標本調査する。④⑤⑥で標本調査した結果、仕様を満たさないものがあれば全数調査に変更して再度検査する

①②③은 전수조사, ④⑤⑥은 XX% 확률로 표본조사를 한다. ④⑤⑥에서 표본조사한 결과,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전수조사로 변경하여 다시 검사한다.

イ 書類検査 나. 서류 검사

- ①本体、リチウムイオン蓄電池、充電器の社内検査を全数調査方式で行った結果、全て合格していることを固有番号ごとに示す書類またはデータ  
차량 본체, 리튬이온 축전지, 충전기의 내부 검사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과한 것을 고유번호별로 표시한 서류 또는 데이터
- ②パレットおよびその外部構造物が木製の場合、国際基準(ISPM No. 15)に従い、熱処理を行ったことを証明する書類の複写本  
팔레트 및 그 외부 구조물이 목재인 경우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 열처리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복사본

---

別紙目録 2 は以上 별접 목록 2 는 이상임. 契約書全文は以上계약서 전문은 이상임.